

다수공급자계약 표준규격서 2020년

- 도막형바닥재 -

☐ 계약업체

업체명	주식회사 펀스케이프
주소	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바람골길 117-38
전화번호	031-574-2508
FAX	031-624-2508
단체표준 인증번호	제 18-D142호

☐ 계약품목

순번	물품식별번호	규격명	종류
1	23540478	FUN-DM100, t1mm, 열경화성수지/MMA	열경화성수지
2	23540479	FUN-DM200, t2mm, 열경화성수지/MMA	열경화성수지
3	23540480	FUN-DM220, t2mm, 열경화성수지/MMA, 스텐실	열경화성수지



주식회사 펀스케이프

1. 적용범위 및 분류

1.1. 적용범위

본 규격은 아스콘, 투수콘,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「도막형바닥재」에 대하여 규정한다.

본 규격이 적용된 제품은 균열, 마모, 탈색 및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도록 설계된 환경친화제품으로 자전거도로, 보행자도로, 테마거리 등에 설치(포장)하는데 한하여 적용하며, 차도,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,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나 생활체육시설(테니스코트, 농구코트, 배구코트 인라인스케이트장) 또는 벽체에는 적용을 제외한다.

1.2. 분류

분류번호	물품식별번호	규격명	종류 (수지종류)	두께	비고
30129997	23540478	FUN-DM100	열경화성수지/MMA	1mm ($\pm 0.5\text{mm}$)	도로표지 유성
	23540479	FUN-DM200	열경화성수지/MMA	2mm ($\pm 0.5\text{mm}$)	도로표지 유성
	23540480	FUN-DM220, 스텐실	열경화성수지/MMA	2mm ($\pm 0.5\text{mm}$)	도로표지 유성

2. 적용자료 및 문서

다음의 인증표준은 이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.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.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(모든 추록을 포함)을 적용한다. 또한,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한다.

2.1. 단체표준규격(도막형바닥재-SPS-KSPICKTS-001-7188:2017, 7189:2017)

2.2. 「도로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등에 관한 고시」(국립환경과학원 고시)

3. 필요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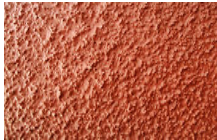
3.1. 재료

식별번호	규격명	시공두께	(1㎡)당 재료소요량				재료공급자	원산지
			재료명	규격	소요량	단위		
23540479	FUN-DM200	2mm (±0.5mm)	프라이머	MMA	0.3	Kg	조광페인트	대한민국
			수지	MMA	2.6	Kg	편스케이프	
			경화제	MMA	0.05	Kg	조광페인트	
			골재	4호사	0.3	Kg	경인소재	

* 프라이머는 기층이 콘크리트 인 경우에 만 적용 함.

3.2. 형태

바닥 표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얼룩이 지거나 들뜬 부분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보수작업 이후 본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식별번호 : 23540479		규격명 : FUN-DM200	
평면사진	측면사진	단면도	
		  MMA수지 ※ 콘크리트 포장 시 프라이머 도포 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	

3.3. 제조 및 가공

3.3.1. 시공현장 안전점검 및 통제

- ① 시공자는 시공구간의 안전 및 시공 장소의 확보를 위해 현장교통 통제를 조사 분석하여 최적 교통관리 대안을 계획하여 교통통제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교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 안내판을 통행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작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교통안전요원을 현장에 상시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.

3.3.2. 표면정리(청소)

- ① 현장의 온도, 습도를 체크하여 포장 여건을 반드시 파악한다.
- ② 하시면 청소 및 크랙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을 실시한다.

3.3.3. 마스킹 테이프 부착

- ① 시공이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선형에 맞추어 시공한다.
- ② 측량위치를 표시하여 계획한 위치에 테이프를 부착한다

3.3.4. 재료 교반 및 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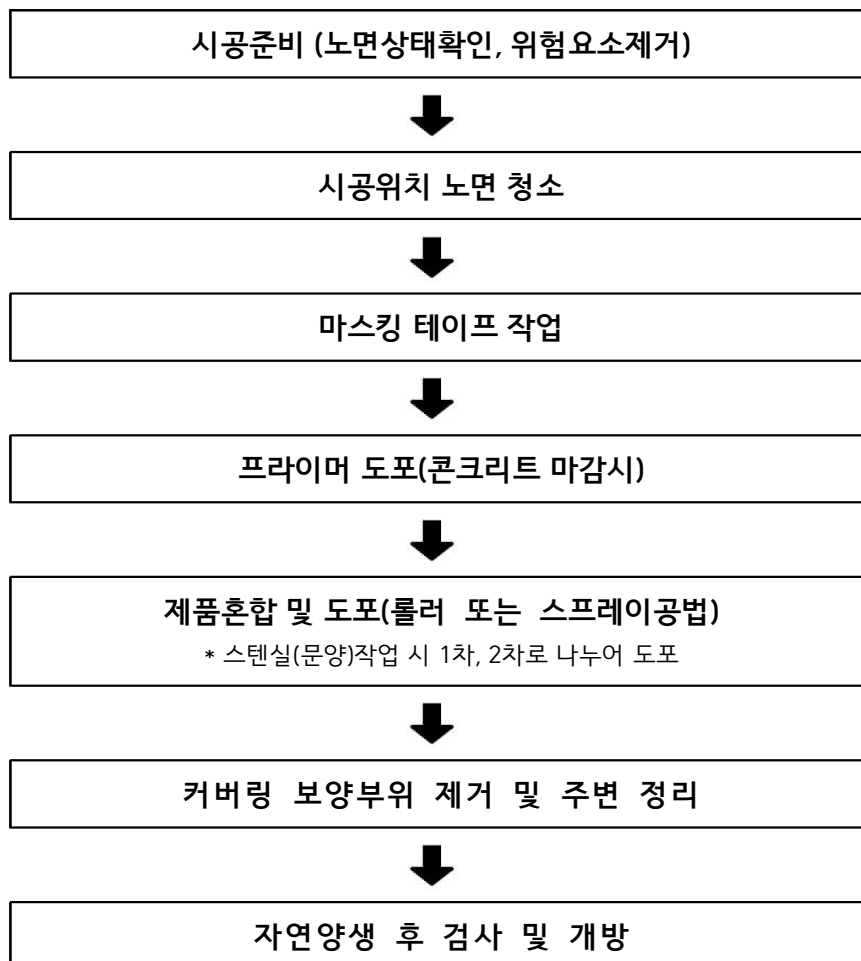
- ① 도로의 청소상태를 확인 후 도포 작업을 진행한다.
- ② 주제와 경화제를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한다. 이때 기온에 따라 경화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경화제의 양을 가감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. 그러나 경화제의 비율에 따라 물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작업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용 경화제를 추천사용량에 의거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교반 후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원하는 피도면에 적정량을 일정한 두께로 도포 또는 분사한다
- ⑤ 가사시간이 지난 것을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접착불량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
3.3.5. 마스킹 테이프의 제거

- ① 도포된 도료가 경화되면 테이프 제거가 어려우므로 도포 완료구간은 테이프를 신속히 제거한다.

3.3.6. 현장 여건 및 시공 상황에 따라 위의 공정 중 일부는 변경, 누락 될 수 있다.

3.3.7. 시공순서 개요도



3.4. 마감 및 외관

- 3.4.1. 도막형 바닥재의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마감하여, 외관상 적합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.
- 3.4.2. 포장면이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.
- 3.4.3. 휨이나 비틀림, 요철, 재료분리현상 등이 없어야 한다.
- 3.4.4. 갈라짐, 찢어짐 등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.
- 3.4.5. 기탁사항: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.

4. 그 외 도막형바닥재의 원료와 품질기준, 시험방법(시료채취 방법 포함) 및 시공방법등에 대한기준은「단체표준규격(도막형바닥재-SPS-KSPICKTS-001-7188, 7189:2017)」을 우선 적용한다.